

“도서관인윤리선언” 제정

— 1년간의 준비 끝에 도서관대회에서 선포 —

우리협회에서는 1996년 제47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“사서직윤리헌장”(가칭) 제정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9월 이후, 모두 10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공청회 및 2차례의 지상공청을 거치면서 「도서관인윤리선언」에 대한 3차의 제안문을 작성하고, 끝으로 이사회 심의를 받아 그 문안을 확정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설악 한화콘도에서 개최된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식에서 이를 선포하였다. “도서관인윤리선언”은 머릿글 아래 일곱 개의 대항목과 스물여덟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 작업과정 및 선언문 전문은 다음(38쪽)과 같다.

▶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 주요일지

- '96. 3. 18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사업채택
- '96. 9. 21 “사서직윤리헌장기초위원회” 구성, 첫회의
- '96. 10. 19 “도서관인윤리선언문안작성특별위원회”로 개편
위원 : 현규섭(위원장·공주대학교 교수), 김정근(부산대학교 교수)
이경구(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장), 이용훈(당시 전국사서협회 회장)
조원호(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)
- '96. 11. 1 '96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
— 이후 네차례 ('96. 12.17, '97. 1.31, 2.14, 2.24) 회의를 거쳐
- '97. 4. 12 제7차 회의에서 제1차 제안문 작성
— 紙上공청(도서관문화3·4월호) 및 學界공청회(4개 학회공동학술대회, 무주, 6.26— 28)를 거친 후,
- '97. 8. 28 제8차 회의에서 제2차 제안문 작성
— 다시 紙上공청(도서관문화7·8월호)과 일반공청회(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, 9.29)를 거쳐서,
- '97. 9. 29 제9차 회의에서 제3차 제안문(위원회 최종 안) 작성, 사무국에 통보
- '97. 10. 16 이사회에 상정, 심의(예정대로 선포하되, 15개 항목의 자구에 대한 재검토 권고)
- '97. 10. 21 제10차 회의에서 이사회 권고 안 신중 검토 후 “도서관인윤리선언”문 최종 확정
- '97. 10. 30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선포



도서관인 윤리선언

도서관인은 민족과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운영주체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. 이 책임은 우리들 도서관인의 모든 직업적 행위의 바탕에, 비판적 자기성찰과 윤리적 각성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완수될 수 있다. 이에 우리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지켜 나갈 윤리적 지표를 세워 오늘 세상에 천명한다.

1. 【사회적 책무】 도서관인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
- 가.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.
- 나. 도서관인은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한다.
- 다.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.
- 라. 도서관인은 성숙된 지식사회를 열어가는 문화적 선도자가 된다.

2. 【자아성장】 도서관인은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문명과 더불어 발전한다.

- 가. 도서관인은 자신을 개선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진한다.
- 나. 도서관인은 자신의 직무가 역사를 보존하며 사실을 전수하는 행위임을 자각한다.
- 다. 도서관인은 사회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.
- 라. 도서관인은 개혁자의 정신으로 일상의 난관을 극복하며 열정과 인내, 그리고 용기와 희망 속에서 일한다.

3. 【전문성】 도서관인은 전문지식에 정통하며 자율성을 견지하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한다.

- 가. 도서관인은 자신의 업무영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한다.
- 나. 도서관인은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.
- 다. 도서관인은 소속된 조직의 입장이 전문성의 원칙에 배치될 경우 전문가적 신념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.
- 라. 도서관인은 전문직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4. 【협력】 도서관인은 협동력을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.

- 가. 도서관인은 협력의 기초가 되는 소속 도서관의 능력 신장에 먼저 노력한다.
- 나. 도서관인은 도서관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.
- 다. 도서관인은 다른 사회기관과 협력하여 부단히 활동영역을 확장한다.
- 라. 도서관인은 자신의 조직에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협력의 의지를 지켜나간다.

5. 【봉사】 도서관인은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하고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유도한다.

- 가.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전문적 봉사에 힘쓴다.
- 나.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이념, 나이, 성별,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.
- 다. 도서관인은 항상 친절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.
- 라. 도서관인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6. 【자료】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, 조직,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.

- 가. 도서관인은 민족의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을 지키는 책임을 진다.
- 나.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체의 편견이나 간섭 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.
- 다.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조직함에 있어서 표준화를 지향한다.
- 라.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.

7. 【품위】 도서관인은 공익기관의 종사자로서의 품위를 견지한다.

- 가. 도서관인은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.
- 나. 도서관인은 항상 정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아니한다.
- 다. 도서관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일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한다.
- 라. 도서관인은 직업적 윤리규범을 성실히 지킨다.